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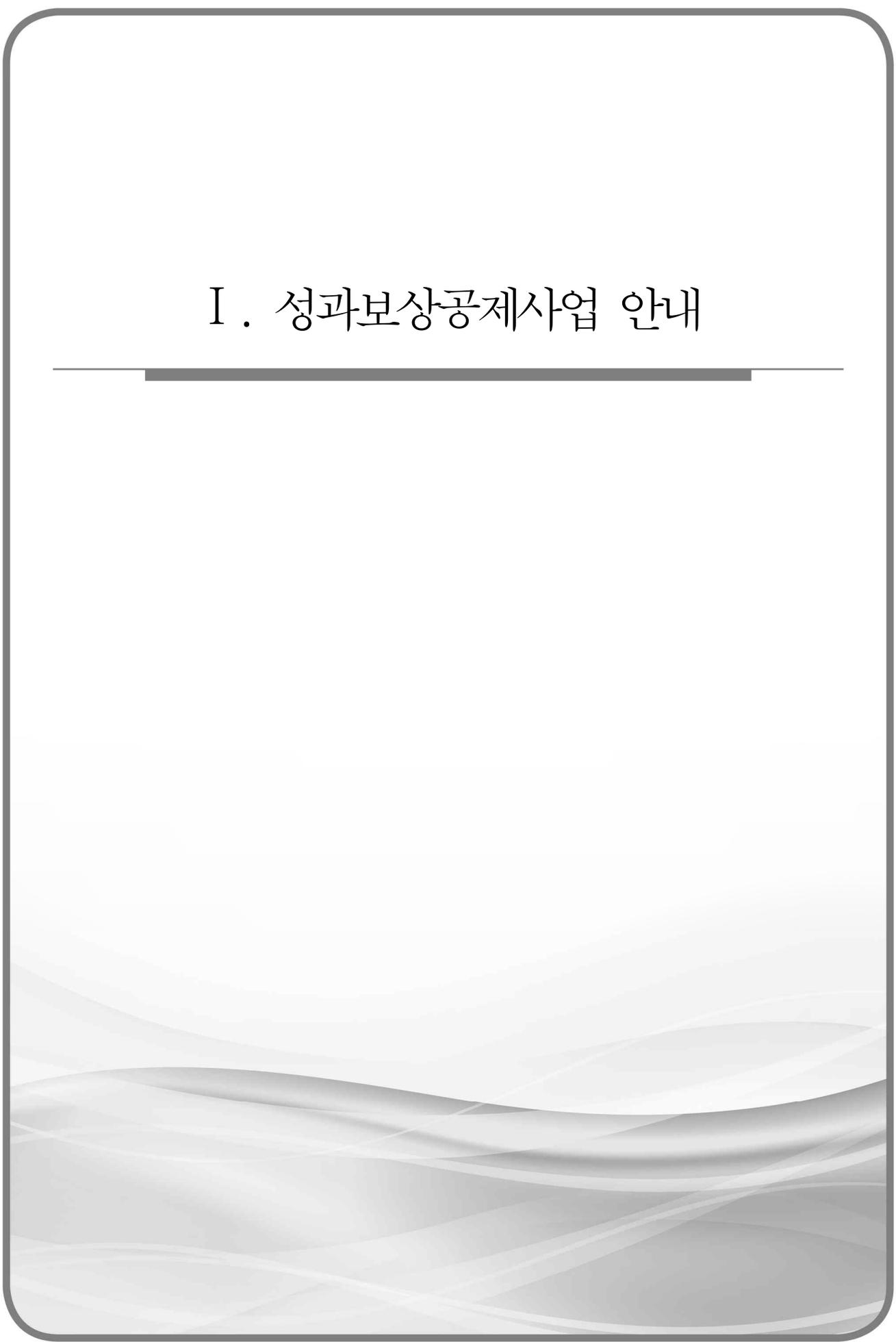
외부용

내일채움공제사업 매뉴얼

2024. 5.

성과보상처

I . 성과보상공제사업 안내



1

성과보상공제사업 개요

□ 공제상품

- (현황) 정부지원이 존재해 수요가 높았던 청년대상 공제사업*의 종료로 '24년 현재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만 신규가입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청년재직자(플러스) 내일채움공제

구 분	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사업내용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10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만기 시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기업과 청년공제 만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3년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주관부처	중기부	중기부·고용부
시행일	'14년 8월	'21년 10월
가입대상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재직근로자) * 인원, 자격,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배출 중소(중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근로자
가입기간	5~10년	3년
적립금액	5년간 2,000만원 이상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2(이상) (월 34만원 이상)	3년간 1,008만원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1 (월 14만원씩 정액적립)
우대혜택 (공통)	기 업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납입금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 경비(개인기업) 인정 · 기업납입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제외) · 중기부 사업 평가·선정시 우대 · 우수 근로자 유입, 핵심인력양성 및 장기재직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재직 후 본인납입금 대비 2배 이상(세전) 수령 · 5년 이상 가입 후 공제금 수령시 기업기여금 50% 이상 근로소득세 감면* ·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 휴가비 지원사업, 건강검진, 전용 온라인복지몰 등 복지혜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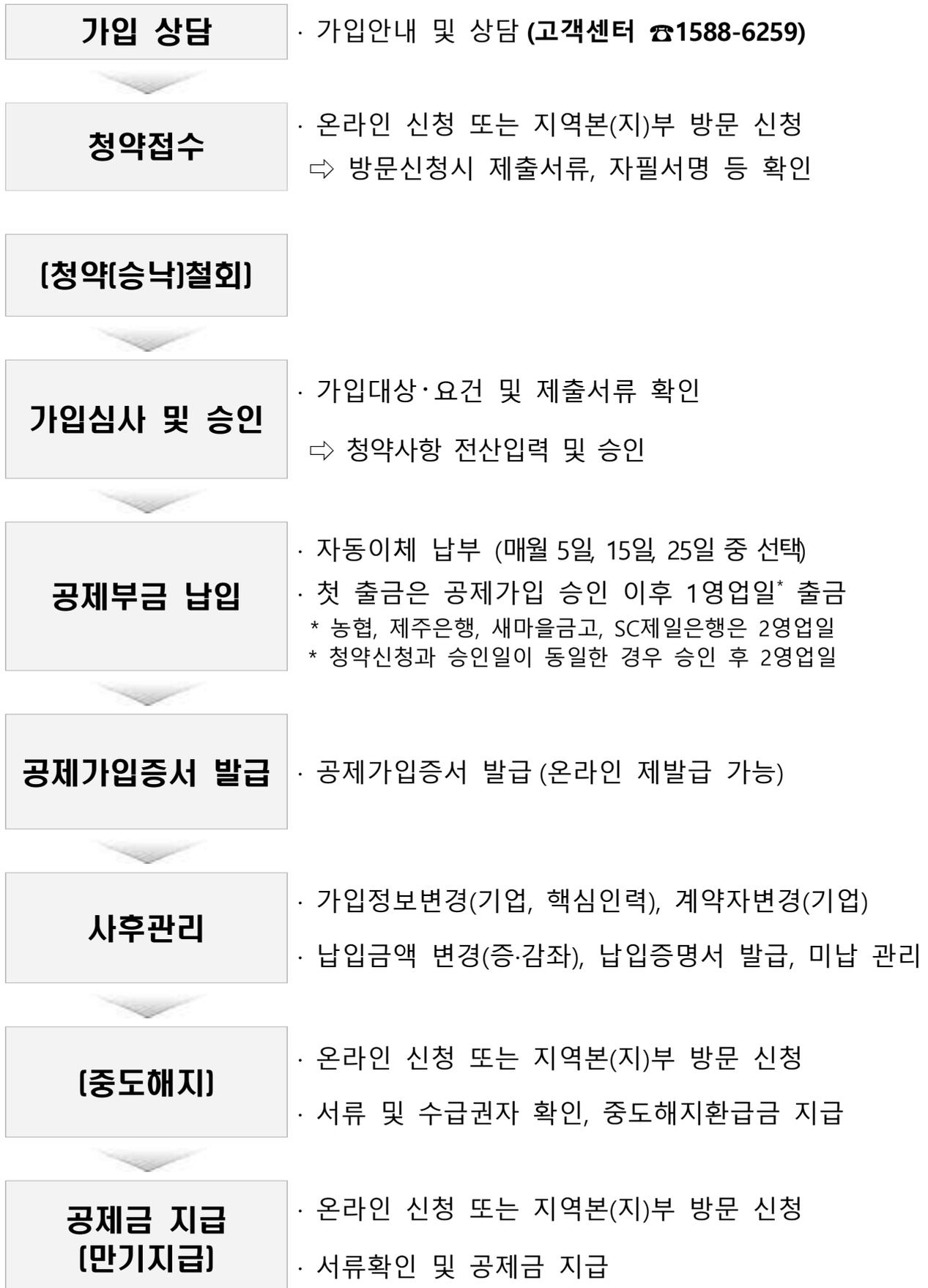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예치시 적용

○ (종료사업) 신규가입 불가하며, 기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만 수행

구 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주관부처	고용부(중진공)	중기부(중진공)	
목 적	청년근로자(신규채용)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재직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및 장기재직 촉진	
가입대상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만34세 이하 신규 채용자)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근로자	50인 미만 제조·건설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근로자
가입기간	2년	3년	
월납입액	청년 : 기업 = 1 : 1 (20개월 월 16만원, 4개월 월 20만원) * 정부지원금 5회 분할적립	청년 : 기업 = (청년 최소 12만원, 기업 20만원) * 정부지원금 7회 분할적립	청년 : 기업 = 1 : 1 (1년차 14만원, 2~3년차 18만원) * 정부지원금 6회 분할적립
총적립액	2년간 1,200만원 (청년 400+기업 400+정부 400)	5년간 3,000만원 이상 (청년 720+기업 1,200+정부 1,080)	3년간 1,800만원 (청년 600+기업 600+정부 600)
우대혜택	내일채움공제(기존) 혜택 + 정부재정 지원		
시 행 일	2016. 7. 1.	2018. 6. 1.	2023. 2. 28.
사업기간	종료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후관리는 성과보상처 및 고용부(고용센터)에서 진행

□ 업무절차 개괄



◎ 내일채움공제

□ 사업개요

-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

□ 지원대상

-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3에 따른 중견기업 포함
 - * 유흥주점업, 갬블링 등 일부업종 제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 * 의료법인 및 비영리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에 따른 규모 이하 가입확대
-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자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 성과보상공제규정 제14조(가입대상)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등의 근로시간 단축은 가입 가능

□ 지원조건

- (가입기간) 60개월 이상 120개월 이하 연단위로 가입가능
- (부금납입) 핵심인력:중소기업이 1:2 이상 비율로 납입 (단 매월 34만원 이상)

□ 가입혜택

- (기 업) ①손비인정 + ②세액공제 최대 25%
- (근로자)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소득세 50% 감면*
 - * 가입당시 시 청년인 경우 기업기여금에 대하여 90%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중견기업의 경우 50%)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추가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기업과 청년공제 만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 더하여 3년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 지급
- * 내일채움공제의 적립비율(근로자1:기업2)과 기간(5년)을 조정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정부지원금은 없음

□ 지원대상

-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 이면서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지원조건

- (가입기간) 3년(36개월, 기간 변경·연장 불가)
- (부금납입) 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 공동 납부(1:1비율, 정액적립)
- (가입금액) 3년간 1,008만원(월14만원×2×36개월) + 복리이자

□ 가입혜택

-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동일
- (기업) ①손비인정 + ②세액공제 최대 25%
- (근로자)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소득세 50% 감면*
- *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예치시에만 적용
- ** 가입당시 청년인 경우 기업기여금에 대하여 90%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중견기업의 경우 50%)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종료)

□ 사업개요

-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을, 중소기업에는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근로자)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지원조건

- (가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부금납입)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 (기업부담금: 기업→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정부→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 가입혜택

- (기업) ①손비인정 + ②세액공제 최대 25%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종료)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

□ 지원대상

-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3에 따른 중견기업 포함
 - * 유흥주점업, 갬블링 등 일부업종 제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 * 의료법인 및 비영리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에 따른 규모 이하 가입확대
-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로, 청약신청일 현재 당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 * 성과보상공제규정 제14조(가입대상)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등의 근로시간 단축은 가입 가능

□ 지원조건

- (가입기간)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60개월
- (부금납입)
 - (기 업) 월 최소 20만원 이상
 - (근로자) 월 최소 12만원 이상
 - (정 부) 최대 3년간 1,080만원을 성과보상기금에 지원·적립 (총 7회)

□ 가입혜택

- (기 업) ①손비인정 + ②세액공제 최대 25%
- (근로자)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소득세 50% 감면*
 - * 가입당시 시 청년인 경우 기업기여금에 대하여 90%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중견기업의 경우 50%)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종료)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과 인력유출 방지 및 청년근로자 장기재직·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동일 비율로 공제금을 3년간 적립하여 만기 시 1,8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

□ 지원대상

- (기 업)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 (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 지원조건

- (가입기간) 3년간 1,800만원(청년·기업·정부 각 600만원)
- (부금납입)
 - (기 업) 1년차 14만원, 2~3년차 18만원
 - (근로자) 1년차 14만원, 2~3년차 18만원
 - (정 부) 최대 3년간 600만원을 성과보상기금에 지원·적립 (총 6회)

□ 가입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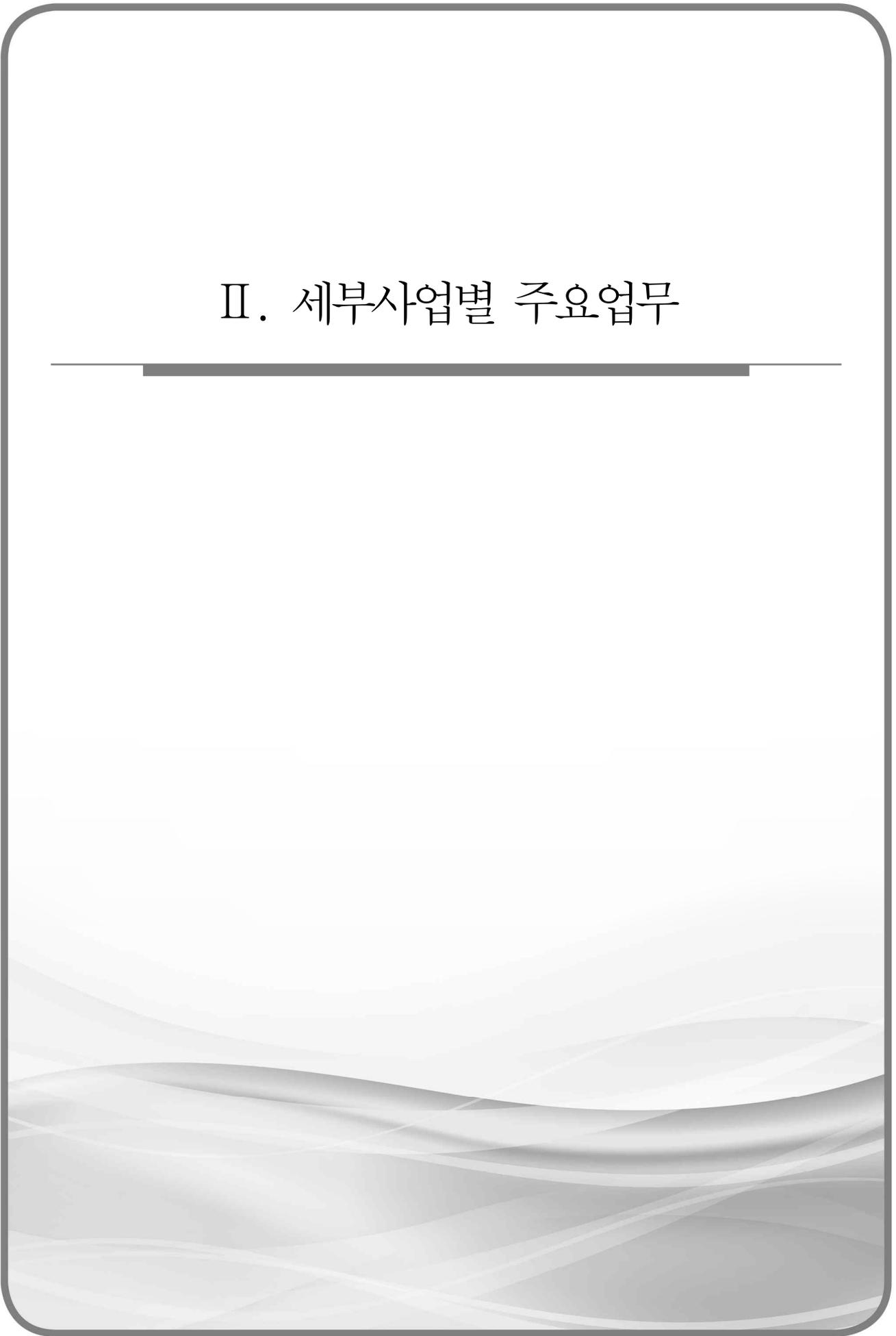
- (기 업) ①손비인정 + ②세액공제 최대 25%

□ 계약관련 용어



구 분	내 용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 이전 시점에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청약승인 철회	청약승인 후 3개월 이내 계약 미성립시 중진공의 청약승인 철회
계약취소	계약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 계약자가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사유발생일과 무관)
중도해지	계약성립일부터 3개월 이후 장래에 대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귀책사유에 따라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연계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플러스) 내일채움공제 계약자가 공제사유 발생 이후, 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하는 것
재가입	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 이후, 동일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것

Ⅱ. 세부사업별 주요업무



1

청약접수 및 승인(거절)

□ 청약 접수

○ 온라인 접수(www.sbcplan.or.kr) 또는 지역본지부 방문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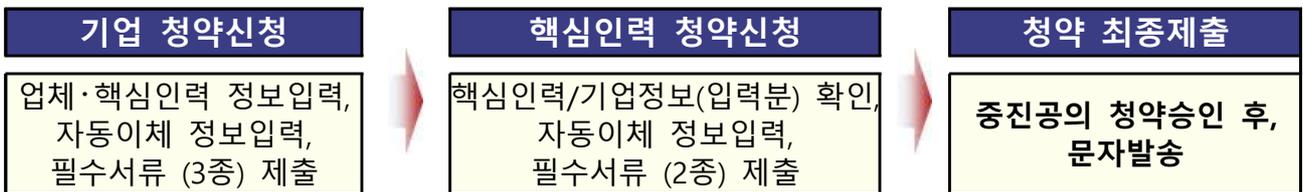
① (온라인 접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은 공제계약 신청인(기업 및 핵심인력)이 직접 공동인증서*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청약 신청(대리인 신청 불가)

* 기업 : 사업자 공동인증서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활용불가)

* 핵심인력 : 본인의 개인용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 신청 절차 : 공제가입 기업이 먼저 청약정보를 입력하고, 핵심인력이 본인 청약정보 입력 후, 최종제출



※ (기업/인력 공통) 공인인증서 로그인, 약관/개인정보 동의,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要

- 제출서류 : 청약서는 홈페이지 내 작성, 첨부서류는 파일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시, 기업 소재지에 따라 관할 지역본(지)부 자동 배정되며 복수관할은 기업이 청약신청 최종화면에서 관리부서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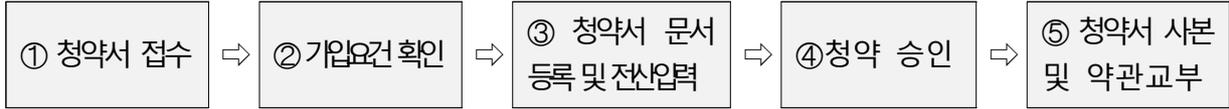
<온라인 청약 구비서류>

기업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핵심인력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나이(국민연금), 업종 및 규모(산재보험) 등에 따라 가입 제한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중 일부만 확인서 제출 시에도 가입 가능함.

임원(이사 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로 판단하여 가입 가능

② (방문접수) 기업주와 핵심인력 본인이 방문 접수해야하며, 대리인 접수 가능 → 접수된 공제계약 청약서는 담당자가 공제가입 요건 등을 확인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승인 및 거절 확정



<내일채움공제 청약 구비서류>

	청약신청자에 따른 필요서류		
	기업주+핵심인력	기업주or핵심인력	대리인
1	청약서	청약서	청약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or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사본 or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사본 or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납세증명(기업)	국세납세증명(기업)	국세납세증명(기업)
4	지방세납세증명(기업)	지방세납세증명(기업)	지방세납세증명(기업)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6	신분증 (대표자, 핵심인력)	신분증 (대표자, 핵심인력)	신분증 (대표자, 핵심인력, 대리인)
7	핵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위임장 (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 (대표자, 핵심인력)
8	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사실여부증명원	인감증명서 (대표자, 핵심인력)	인감증명서 (대표자, 핵심인력)
9		인감도장 (대표자, 핵심인력)	인감도장 (대표자, 핵심인력)
10		핵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핵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1		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사실여부증명원	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사실여부증명원

※ 방문 접수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본인확인, 자필서명(또는 인감날인) 확인 필수
- 공제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및 확인은 반드시 자필서명(인감날인 불가)

구분	비고
① 공제계약 청약서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② 공제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및 확인	자필서명
③ 기업 및 핵심인력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자동이체 계좌 사본 제출 생략 (전산입력 시, 검증 기능 제공)
- 평생계좌번호(핸드폰번호 계좌) 및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은 보안 문제로 자동이체계좌 등록 불가

□ 공제가입요건 확인

-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3에 따른 중견기업
- * 유흥주점업, 갬블링 등 일부업종 제외 (인력지원특별법 3조)
 - * 의료법인 및 비영리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에 따른 규모 이하 가입확대

○ 가입 제한 사항

- 휴·폐업중인 기업
 -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 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및 부정수급을 안날로부터 2년 미경과 하거나 보조금법 등에의해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기업

※ 주의사항

- 비영리기업, 외국계 중소기업 등은 가입불가함, 필요 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http://www.mme.or.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및 확인**
- 단,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비영리 법인은 확인서 발급 불가로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가입대상 여부 확인

- ② **[핵심인력]**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가입 가능

○ 가입 제한 사항

- 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날로부터 2년 미경과 하거나 보조금법 등에의해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자
 - * 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③ (가입금액) 60개월 이상 월 최소 34만원 이상 (기업, 핵심인력 납입금 합계액)으로 기업이 핵심인력 납입금의 2배 이상 납입 (납입 최소 단위는 1만원)

* 공제납입금 상한제한 : 중소기업 200만원, 핵심인력 100만원

* 기업 23만원, 핵심인력 11만원 (핵심인력 최소 1만원 이상)

④ (청년연계형)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배출) 및 핵심인력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이 3년간 14만원씩(고정) 공동납부

2

중도해지 (전 상품 공통)

□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 계약자는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중도해지 가능
 - 기업 및 핵심인력이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중진공에서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해지환급금 지급) 해지 사유에 따라 지급대상 결정

< 사유별 수급권자-일반내일채움공제 >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중소기업의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핵심인력의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핵심인력	핵심인력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공제사업과 연계한 기업의 부당행위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핵심인력 귀책	◦ 핵심인력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중소기업	핵심인력
	◦ 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 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 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 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 기타		
기타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공제부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중소기업	핵심인력
	◦ 핵심인력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핵심인력	핵심인력

< 사유별 수급권자- 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

구 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 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사업주의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행위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청년 근로자 귀책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기타(배임·횡령 등)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지원금 반환
기타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 (정부지원금 지급) 청년재직자(플러스) 상품 중도 해지시 정부 지원금 지급금액은 해지사유 및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

* 다만,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와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 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

< 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귀책사유	시기별 적립된 정부지원금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정부지원금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공제부금 납부차수	1회차	2~6 회차	7~12 회차	13~18 회차	19~24 회차	25~30 회차	31~36 회차
	적립금액	120 만원	12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180 만원	180 만원	180 만원
누적금 액	120 만원	240 만원	390 만원	540 만원	720 만원	900 만원	1,080 만원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소기업 귀책사유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						
	정부지원금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공제부금 납부차수	1회차	2~7회차	8~13회차	14~19회차	20~25회차	26~31회차
	적립금액	70만원	90만원	100만원	100만원	110만원	130만원
	누적금액	70만원	160만원	260만원	360만원	470만원	600만원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60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36개월 + 그 기간 이자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접수로 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계약자(기업, 핵심인력)가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여 신청하며 마지막 신청자가 해지사유에 동의할 경우 최종 제출(신청순서 무관) → 미 동의시, 수정가능하며 수정 시 첫번째 입력단계로 복귀

<온라인 해지 신청 절차>

기업(또는 핵심인력)	⇒	핵심인력(또는 기업)
①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해지 신청 사유 선택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업로드) ③ 제출		①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해지 신청 사유 확인 (사유 미동의시, 기업 수정 요청)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업로드) ③ 최종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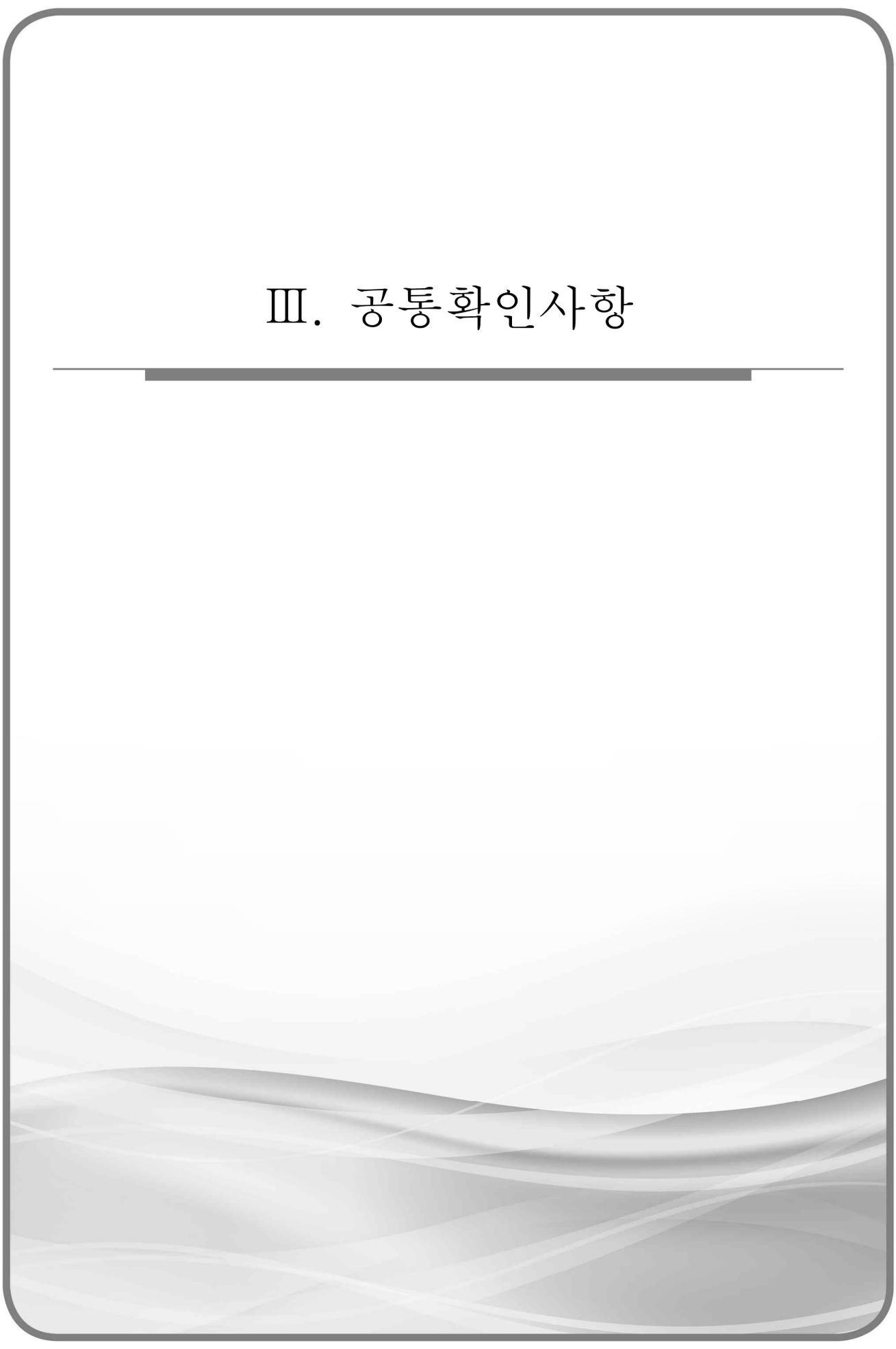
- * 계약자 편의 및 지역본(지)부 담당자 업무 부담 경감(본인확인, 사유확인 등)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 안내
- (방문 신청) 공제계약 해지는 계약자(기업, 핵심인력)의 방문 접수가 원칙이나 퇴사, 폐업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접수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 우편접수 및 대리인 신청시 반드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계약해지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업주 + 핵심인력	기업주 or 핵심인력	대리인
① 청구서 (온라인작성)	① 종도해지 및 환급금 청구서	① 종도해지 및 환급금 청구서	① 종도해지 및 환급금 청구서
② 증빙서류 (필요시 업로드)	②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②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②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③ 신분증 (대표자, 핵심인력)	③ 신분증 (대표자, 핵심인력)	③ 신분증(대리인) *대표자 핵심인력은 사본
		④ 위임장 (대표자, 핵심인력)	④ 위임장 (대표자, 핵심인력)
		⑤ 인감증명서 (대표자, 핵심인력)	⑤ 인감증명서 (대표자, 핵심인력)
		⑥ 인감도장 (대표자, 핵심인력)	⑥ 인감도장 (대표자, 핵심인력)

* 증빙서류 예시 : 사직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Ⅲ. 공통확인사항



[가입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3에 따른 중견기업

- * 유흥주점업, 갬블링 등 일부업종 제외 (인력지원특별법 3조)
- * 의료법인 및 비영리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에 따른 규모 이하 가입확대

□ 비영리사업자(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인 경우

- 비영리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불가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5호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관련

-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 ⋮
 -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가입 불가)
 -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외국계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이므로, 외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대상이 아님
 -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도 사업자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가 '84'인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의 경우,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만족할 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가입 가능함

□ 의료법인인 경우

- 의료법인 등은 의료법에 따른 비영리성으로 인해 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인력지원특별법 내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의료법인 등 종사 근로자도 공제사업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7>

-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21.10.21 시행)

* (의료법 33조 2항 3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 (의료법 33조 2항 4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37호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법인

- (제출서류) 의료법인의 공제가입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를 징구받아 확인

[의료법인 확인 제출서류]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고유번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요시) 정관,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외부감사 대상일시 외감보고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활용 가능

- (참고사항)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확인을 위해 ①법인등기부등본 상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지와 ②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가 '82'인 경우 비영리법인 추정가능

□ 대기업 프랜차이즈인 경우

- 대기업 프랜차이즈인 경우, 직영점은 가입이 불가하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가능

□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 (원칙)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 제15조에 따라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는 가입불가

* 매출이 없더라도 타기업 대표자 겸직 또는 사업자등록한 자는 가입불가

○ (예외) ①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어 계약유지 가능

*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8호

【 취업인정 제외기준 】

①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구 분		징구서류
휴업신고	사업개시일=휴업일	휴폐업사실확인서(휴폐업증명서)
	사업개시일≠휴업일	다음의 ①, ② 모두 징구 ①사업개시일~휴업일까지 사업을 하지 않음을 증명한 서류 ②휴업일 이후 휴·폐업 사실확인서
기타(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다음의 ①, ②, ③ 중 한 가지 서류 징구 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or매입매출처별합계 ②재무제표상 매출액 0원 ③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내역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구 분	판단 기준		
근로자 고용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임대 사무실	사업자등록증 주소 = 거주지 주소		임대사무실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사업자등록증 주소 ≠ 거주지 주소	전체면적 임차	임대사무실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부분면적 임차	토지, 건물등기부 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확인 또는 현장실사, 가입자 상담 등을 통해 판단

- (유의사항) 만기 해지시 사업자등록여부 및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재확인한다는 점 안내 必
- (조치사항) 사업자등록 사실 확인 시 공제계약 유지가 불가하며, 사업자등록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함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계약성립일 이후	계약성립일 이전
핵심인력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사유발생일 : 사업자등록일 1일 전)	청약철회 (가입제한대상)

□ 외국인근로자 가입시 검토사항

【 외국인등록증? 비자? 체류자격? 】

구분	내용
외국인등록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성명, 국적, 체류자격 및 기간 등을 신고하는 제도 (내국인의 주민등록제도 개념)
비자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허가증(사증)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이 명시됨
체류자격	· 단기: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 기간동안 체류 (비자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 초과 가능) · 장기: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 90일을 초과하는 체류자격

- (확인서류) 필수서류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여권 확인
- (가입점토) 별도의 가입제한은 없으나, 최소 가입기간이 3년이므로
①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확인 또는 ② 여권정보로 체류만료일 조회 (하이코리아> 기타조회서비스> 체류만료일 조회)

【 참고 :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체류자격(기호)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체류기간의 상한
외교(A-1)	재임기간	구직(D-10)	6개월
공무(A-2)	공무수행기간	교수(E-1)	5년
협정(A-3)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 상의 체류기간	회화지도(E-2)	2년
		연구(E-3)	5년
문화예술(D-1)	2년	기술지도(E-4)	5년
유학(D-2)	2년	전문직업(E-5)	5년
기술연수(D-3)	2년	예술흥행(E-6)	2년
일반연수(D-4)	2년	특정활동(E-7)	3년
		계절근로(E-8)	5개월
취재(D-5)	2년	비전문취업(E-9)	3년
종교(D-6)	2년	선원취업(E-10)	3년
주재(D-7)	3년	방문동거(F-1)	2년
		거주(F-2)	5년
		동반(F-3)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재외동포(F-4)	3년
		결혼이민(F-6)	3년
		기타(G-1)	1년
기업투자(D-8)	영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영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관광취업(H-1)	협정 상의 체류기간
		방문취업(H-2)	3년
무역경영(D-9)	2년		

【 참고 : 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 조회 】



[로그인](#) [회원가입](#) [이동안내](#) [고객센터](#) [한국어](#) [ENGLISH](#) [한국](#)

민원신청
정보조회
자동출입국심사
정보광장
뉴스공지

하이코리아에서는
편리한 민원신청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회 서비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
- 등록증·거소증 유효확인
-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조회
- 등록증·거소증 분실(철화) 신고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조회
-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조회
- 체류만료일조회
- 올아도우미 교육수료자 조회
- 통합고용변동 민원조회
- 전자민원 허가서 발급 확인

■ 체류만료일 조회

● 여권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1. 입국심사확인증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체류기간 내 출국하여야 합니다.
(입국심사확인증을 분실한 경우라도 별도의 조치없이 출국 가능하며,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단, 재발급을 원하시든 인천공항 출입국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번호 ㉠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 국적 ㉡	<input type="radio"/> 러시아(연방) <input type="radio"/> 홍콩 <input type="radio"/> 미국 <input type="radio"/> 베트남 <input type="radio"/> 인도 <input type="radio"/> 인도네시아 <input type="radio"/> 일본 <input type="radio"/> 중국 <input type="radio"/> 타이 <input type="radio"/> 필리핀 <input type="radio"/> 한국계러시아인 <input type="radio"/> 한국계중국인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button" value="국가선택"/>
* 생년월일 ㉢	<input style="width: 4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type="button" value="년"/> (8자리 입력, ex. 19701123)
견본보기	
입력확인	<input style="width: 4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type="button" value="년"/> (모 그림의 숫자를 입력하십시오)

○ (공제사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공제금 지급

* 성과보상공제규정 제 27조 제1항

① 교육·복지혜택

- (휴가비 지원)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제가입자 (7,000명)를 대상으로 기업 부담분(최대 10만원) 전액 지원

【 공제가입자 휴가비 지원 구조 】

중진공 지원 전	근로자 20만원 (50%)	+	중소기업 10만원 (25%)	+	관광공사 10만원 (25%)	➔	근로자 40만원 (100%)
	중진공 지원 후	근로자 20만원 (50%)	+	중진공 10만원 (25%)	+		관광공사 10만원 (25%)

- (건강검진) 공제 장기유지자 (12개월 이상) 대상 건강검진 희망자 1,000명을 모집·선정하여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 무상지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수검 가능
- (영어캠프) 내일채움공제가입자 자녀를 위한 ‘원어민 영어캠프’ 개최 신규
 - 공제가입 中企 재직자(250명)의 초등자녀 (3~6학년) 대상 ① 맞춤형 영어 회화 집중교육, ② 영어클럽활동(팀빌딩) 등 2박3일 영어 캠프 개최
- (온라인 복지물) 내일채움공제 전용 복지물 (폐쇄물, 최저가보장 등) 지원
- (온라인 교육) 중소기업연수원 플랫폼을 활용한 ①이러닝 (직무) 교육과 민간 전문 교육기관의 ② 교육바우처(어학·자격증 교육) 제공
- (가입자 대출) 공제가입자의 긴급 생활자금을 대비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 시행

구분	내용
대출자격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 이상, 공제계약 대출일 현재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한 상태가 아닐 것
대출한도	신청일 현재 핵심인력 공제납입 누계액의 90% 이내 (10만원 단위), 최소 50만원부터 대출 가능
대출기간	공제가입 기간 내에서 1년 이내 (공제가입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출기간은 공제 잔여기간까지)

② 장기재직격려금 제도

- 청년공제계약자가 내일채움공제에 연계가입하여 ①공제가입기간 합계가 7년 이상이고 ②내일채움공제의 공제사유(만기)가 발생한 경우, 격려금 400만원 지급

* 성과보상공제규정 제22조 제4항, 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제12조 제2항

③ 중기부 등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및 우대

지원제도 및 사업명	가점 및 우대사항(지정요건)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책우선도 평가가점) 내일채움공제 유효가입 3점
중소기업 계약학과	재교육형 참여학생 정부보조금 지원 비율 10% 상향
신규병역지정업체 선정	1명 가입시 2점, 1명 증가 시마다 1점 추가(최대 6점)
연수원 패밀리기업	(지정요건) 내일채움공제 가입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공개집합연수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연수비 30%할인
청년창업사관학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서류심사 시 가점 1점

※ 우대사업 및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사항 참조

4

세제혜택

□ 개요

-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해 ①전액 손금 (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 (개인기업) 인정, ②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Max {당기발생액의 25% (중견 8%), 증가발생액 (당기발생액-전기발생액)의 50% (중견 40%)}

- (핵심인력) 5년 만기 (3년연계형의 경우 청년공제만기금 예치 必) 후, 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30~90*% 감면

* 최대주주의 배우자, 친족 등 특수관계인은 감면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참고)

* (중소기업) 청년 90%, 그 외 50% / (중견기업) 청년 50%, 그 외 30%

<납입금액 및 만기 공제금 수령액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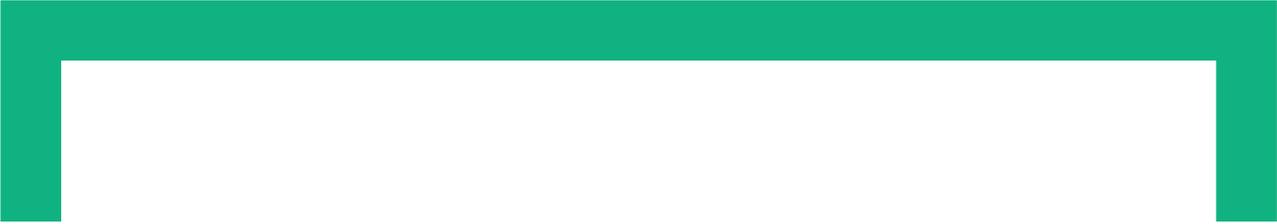
(단위 : 원)

구 분		월 34만원	월 45만원	월 60만원
공제 청약금	핵심인력 납입금	100,000 (100%)	150,000 (100%)	200,000 (100%)
	기업 납입금	240,000 (240%)	300,000 (200%)	400,000 (200%)
	소계	340,000	450,000	600,000
공제금 지급액	핵심인력 납입금 누계액	6,000,000 (10만원×60개월)	9,000,000 (15만원×60개월)	12,000,000 (20만원×60개월)
	기업 기여금	14,400,000 (24만원×60개월)	18,000,000 (30만원×60개월)	24,000,000 (40만원×60개월)
	복리이자 (3.88% 기준)	2,106,294	2,787,742	3,716,990
	만기 수령액 (세전기준)	22,506,294	29,787,742	39,716,990
	핵심인력 본인납입금 대비	3.75배	3.3배	3.3배



- 세제혜택 관련 법적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손금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0의 3호(필요경비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별표 6의 제2호 다목,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6, 시행령 제26조의 6(근로소득세 50% 감면)

※ 세제혜택 매뉴얼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기업 및 핵심인력에게 안내



내일채움공제 세제혜택 안내 자료집

- Part 1 - 기업
 - Part 2 - 근로자(핵심인력)
 - Part 3 - 기업회계 및 세무처리
 - Part 4 - 질의응답
 - Part 5 - 관련 서식
- 

목 차

Part 1. 기업	
1. [기업용] 세제 혜택 설명자료	4
Part 2. 근로자(핵심인력)	
1. [근로자용] 만기공제금(기업납입분) 소득세 감면 안내	11
2.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근로소득세 감면신청 안내	14
Part 3. 기업회계 및 세무처리	
1.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 안내	17
2. 과세표준구간별 절세 효과 예시	18
3.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	19
4. 사례별 세제혜택(납입비용+세액공제) 적용 예시	20
Part 4. 질의응답	
1. [기업] 세제혜택 관련 질의 응답	23
2. [근로자] 세제혜택 관련 질의 응답	26
Part 5. 관련 서식	32



PART 1

기업

1. [기업용] 세제 혜택 설명자료



1 [기업용] 세제 혜택 설명자료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해 비용인정^① + 세액공제 25%^②

- ① (비용인정) 법인기업(손금), 개인기업(필요경비) 인정 (법인세율 9%~24% 적용)
- ②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중견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해 비용인정^① + 세액공제 8%^②

- ① (비용인정) 법인기업(손금) 인정
- ②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세액공제액 : 당기 발생금액과 증가 발생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

세액공제액 : max(①, ②)*

- ① 증가 발생액 기준 : (당기 발생액 - 전기 발생액**) × 다음의 비율
 - ㉠ 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 50%
 - ㉡ 일반기업(非중소기업) : 40%
- ② 해당 연도 총발생액 기준 : 당기 발생액 × 다음의 비율
 - ㉠ 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 25%
 - ㉡ ~ ㉣ 생략

비용인정관련 법령

1. 법인기업(손금 비용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2. 개인기업(필요경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세액공제 혜택

1. 일반 연구개발·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제3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

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ㄱ. 중소기업인 경우 : 25%

ㄴ.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a.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5%

 b. a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0%

ㄷ. 중견기업이 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8%

ㄹ. ㄱ부터 ㄷ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 (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중소기업 유예기간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2호다목**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제10항제4호**

⑩ 영 별표 6 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6.7.>

1~3. 생략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영 제2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빠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세액공제 적용 배제

- 중소기업 납입금(기여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 ①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 ② 5년 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17.3.17) 이후 납입 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1항 각 호] <개정 2018. 2. 13., 2023. 2. 28.>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개정 2023. 2. 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추가 혜택

- (이월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 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간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144 ①)
- (중복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127 ④)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등과 중복 적용 가능
- (최저한세의 배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법인세 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132 ① 3)
 - * 최저한세 세율 : 중소기업의 경우 7%(법인)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45%(개인)
 - (산출 세액이 3천만원 이하 부분은 35% 적용)
 - (중소기업 졸업 후 : 1~3년까지 8%, 4~5년까지 : 9%)
 - 그외기업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 1천억원 이하 → 12%
 -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 → 17%
 - 非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전액 최저한세 대상임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농어촌특별세법 §4 12, 동법 시행령 §4 ⑥ 1)
 - * 농어촌특별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 20%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상이

-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非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 비교】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전업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업종
주업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평균 매출액이 큰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이 큰 업종
업종 별 규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규모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유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위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1항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PART 2

근로자 (핵심인력)

1. [근로자용]
만기공제금(기업납입분)
소득세 감면 안내
2.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근로소득세
감면신청 안내



1 [근로자용] 만기공제금(기업납입분) 소득세 감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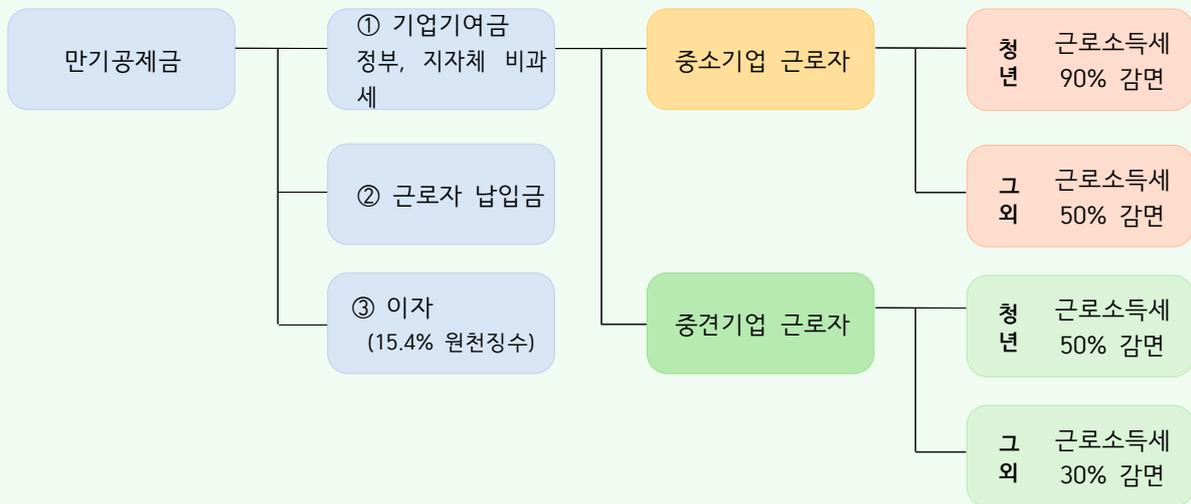
○ 대상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5년 만기 공제금을 수령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세 감면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참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만기 수령하는 공제금 중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해 각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감면 적용 (적용기한 : '24.12.31까지)

<기업 유형, 근로자 구분에 따른 감면율>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 12. 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청년' 판단은 성과보상기금 가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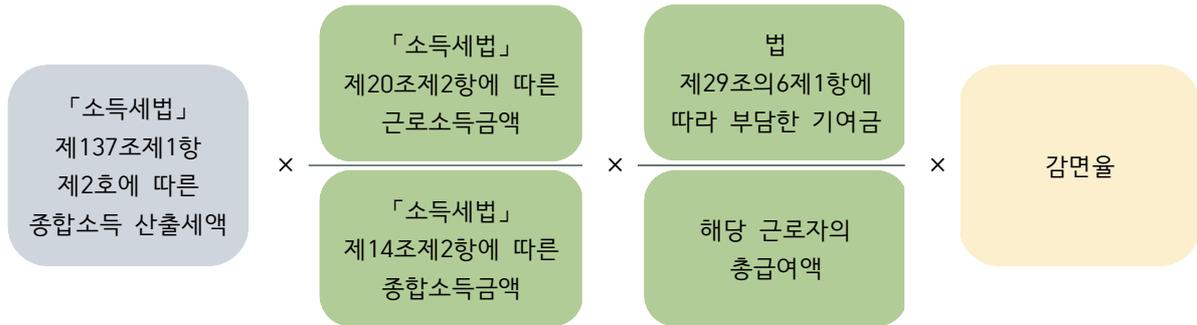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중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청소년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 등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포함)와 그 배우자,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연령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세액 계산식

※ 감면세액 계산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6 제3항)



* 감면율 :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율

근로자 만기공제금 관련 설명

- (중소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6,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거나 중소기업의 귀책사유에 인한 중도 해지로 중소기업 기여금을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식
- (근로소득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조건(핵심 인력이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이 성취되는 날 또는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날

세액공제 적용 배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개정 2023. 2. 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근로소득세 감면신청 안내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기공제금은 크게 기업기여금, 근로자납입금, 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기여금, 근로자납입금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 수령하며 이자소득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 후 수령 받으시게 됩니다.

이 중 중소기업에서 납부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50%(청년근로자 90%), 중견기업의 경우 30%(청년근로자 50%) 세액감면을 받으시기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특수관계인은 세액감면 해당사항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 ① (근로자) 만기공제금 신청
- ② (중진공) 만기공제금 지급
- ③ (근로자) 기업세무담당자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 (익월 말일까지)
- ④ (기업세무담당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
- ⑤ (기업세무담당자) 연말 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 근로소득 반영
- ⑥ (기업세무담당자) 「연말지급명세서」 공제금 수령 다음해 3월10일까지 세무서 제출

기한 내 미신청 시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 절차

1 근로자



만기공제금 신청 수령 이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업세무담당자에 제출(익월 말일까지)

2 중소기업·중견기업
세무담당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

2-(2)중소기업·중견기업
세무담당자



연말 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 근로소득반영 세제혜택 접수

3 세무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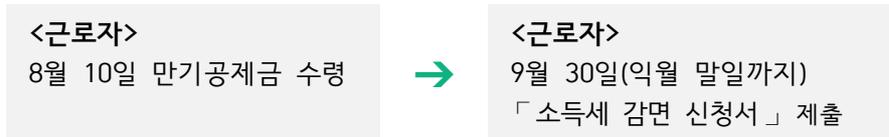
「연말지급명세서」 공제금 수령 다음해 3월10일까지

1 근로자(핵심인력)

(1) 만기공제금 신청 수령 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업 세무 담당자에 제출

- 신청대상 : 만기공제금 수령자 중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신청방법 : 첨부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하여 기업 세무 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기한 : 만기공제금을 수령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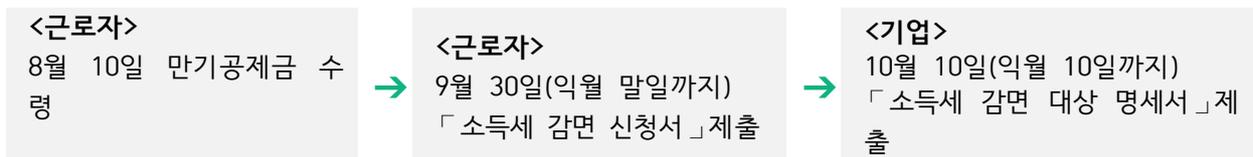


2 중소기업·중견기업 세무 담당자

(1)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

- 제출대상 :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기업·중견기업
- 제출방법 : 첨부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작성하여 세무서 서면제출
- 신청기한 : 신청서를 수령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제출

예시)



(2) 연말 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 근로소득반영

- 작성대상 :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중견기업
- 작성방법 : 만기공제금 수령액은 연말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작성

3 세무서 제출

- 제출시기 : 만기공제금 수령년도(귀속년도) 이후 다음해 3월 10일까지
- 제출서류 : 근로소득지급액에 반영된 연말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만기공제금 지급시 기업기여금 원천징수 방안>

수행주체	세부 절차	기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만기공제금 지급 및 원천징수 제외	공제금 지급 기한
근로자(핵심인력)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공제금 수령 익월 말일
원천징수의무자 (중소기업·중견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국세청 제출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공제금 수령 다음해 3월10일까지

Part 3

기업회계 및 세무처리

1.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 안내
2. 과세표준구간별 절세 효과 예시
3.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
4. 사례별 세제혜택(납입비용+세액공제) 적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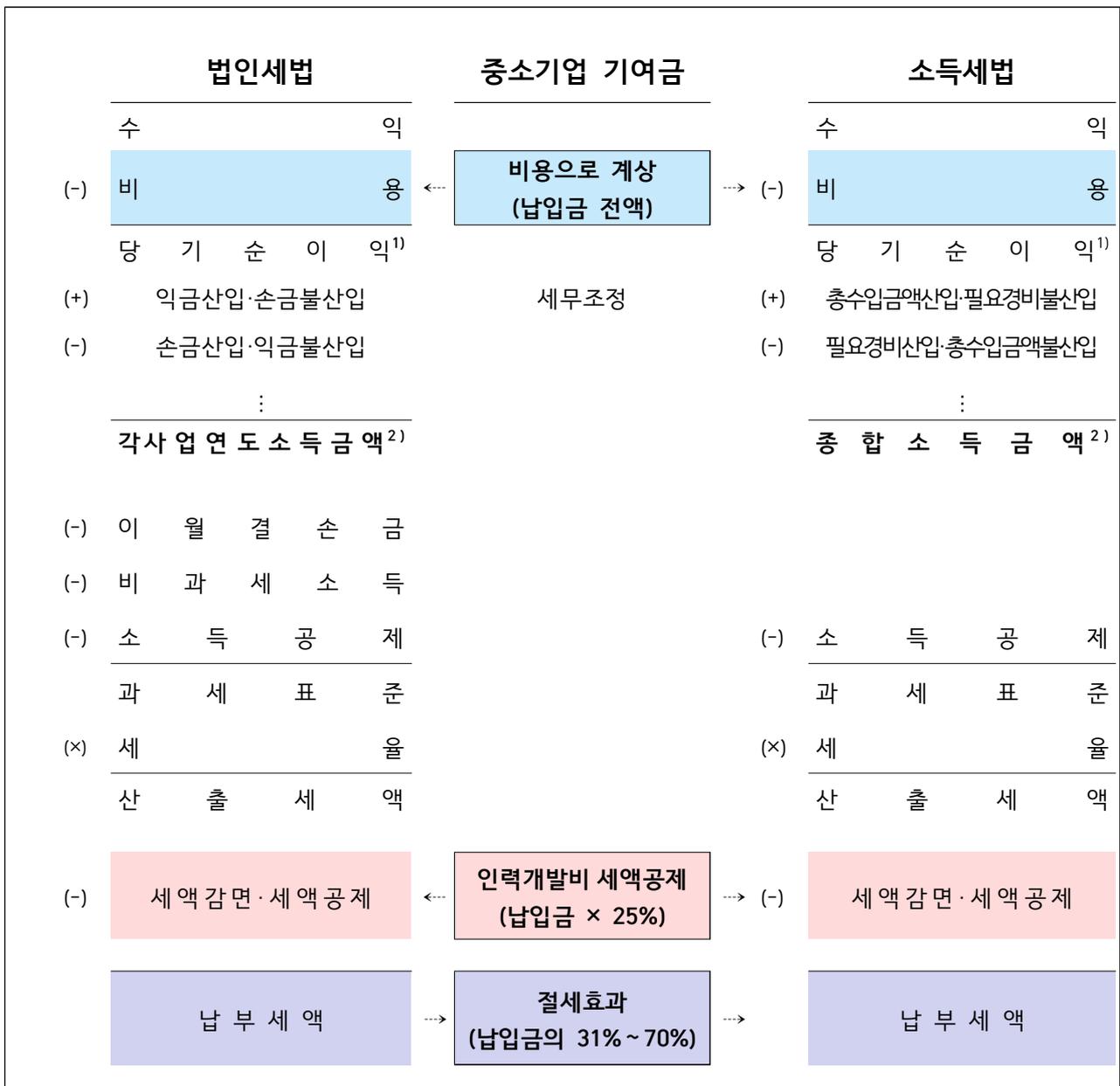


1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 안내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 귀속시기

- 납입금은 매년 해당 사업연도로 회계처리·납입금 전액 비용처리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또는 증가 발생액(직전 4년간 연 평균 발생액)의 50% * 세제혜택(비용인정+세액공제)는 31~70%까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기여금을 반영한 세액 계산 흐름도>



¹⁾ 회계상 소득

²⁾ 세법상 소득 (세무조정으로 차이조정)

2 과세표준구간별 절세 효과 예시

가입예시 月 25만원 × 4명 가입, 중소기업에서 年 1,200만원 납입

절세효과 최소 372만원(31%)에서 최대 840만 원(70%) 절세효과 발생

구분	과세표준	법인(소득) 세율 (a)	세액 공제율 (b)	절세 효과* (c=a+b)	1,200만원 납입 時		
					절세금액	실제 부담액	계
법인 기업	2억원 이하	9%	25%	34%	408만원	792만원	1,200만 원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19%		44%	528만원	672만원	1,200만 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46%	552만원	648만원	1,200만 원
	3,000억원 초과	24%	25%	49%	588만원	612만원	1,200만 원
개 인 기 업	1,400만원 이하	6%	25%	31%	372만원	828만원	1,200만 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40%	480만원	720만원	1,200만 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49%	588만원	612만원	1,200만 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60%	720만원	480만원	1,200만 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63%	756만원	444만원	1,200만 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65%	780만원	420만원	1,200만 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67%	804만원	396만원	1,200만 원
	10억원 초과	45%		70%	840만원	360만원	1,200만 원

*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절세효과 (지방소득세 미포함)

3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

○ 공제부금 예시

- 중소기업 기여금 25만원, 핵심인력 납입금 10만원 (매월 기준)
- 1년 6개월 납입 후 근로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수령액
기업기여금(450만원. 기업수령) 핵심인력(180만원. 핵심인력 수령)

1. 공제부금 납입 시

연구인력개발비	250,000	보통예금	250,000 (매월 회계처리)
구분	내용		
사업소득세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세무조정 필요 없음		
법인세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세무조정 필요 없음		
세액공제	매 사업연도 납입금에 대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2.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수령 시

보통예금	4,609,980	잡이익*	4,500,000
선급법인세	20,020	이자수익	130,000
구분	내용		
사업소득세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은 필요 없음		
법인세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은 필요 없음		
세액공제	감면세액 납부 필요 (중소기업 납입금 환급 시 환급 사업연도에 지출한 중소기업부담금 납입비용에서 차감) * p.20-21 사례2, 사례3, 사례3-1 참조		

공제가입 핵심 인력이 5년 이상 장기 재직하여 공제금을 수령 하였을 경우 해당 기업에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 없음. 다만, 핵심 인력은 공제금 수령한 다음연도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시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처리.

- * 공제납입금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공제부금” 등 새로 만들어 사용하시거나, 인력개발비, 인건비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등 기업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

단,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근로자(핵심인력)가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 전액을 수령 시에는 회계 및 세무처리 불필요

4 사례별 세제혜택(납입비용+세액공제) 적용 예시

사례 1 공제가입 핵심인력이 특수관계인에 해당 될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17.3.17) 이후 납입 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에 세액공제 배제

- '16년도와 '17년도에 해당되는 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납입비용은?

'16년도의 경우, 기업기여금 총액(960만원)이

인력개발비 해당 납입비용 : 세액공제 해당

'17년도의 경우, 총 기업기여금 960만원에서 법시행일('17.3.17) 이후

특수관계인에 대해 납입한 금액(4~12월분, 450만원) : 세액공제 적용배제

기업 기여금인 510만원이 납입비용 : 세액공제 해당

ex) 세액공제 510만원 X 25% = 1,275,000원

* 해당 연도 총 발생액 기준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 발생액 기준(50%) 선택 가능

사례 2 핵심인력이 중도해지 할 경우

예시) 기업기여금으로 근로자 A,B,C 에 대해 月25만원을 미납 없이 납입(법 시행일 '23.1.1일로 가정)

1년차	근로자 A(月 25만원)	300만원	총 900만원
	근로자 B(月 25만원)	300만원	
	근로자 C(月 25만원)	300만원	
2년차	근로자 A(月 25만원)	300만원	총 750만원
	근로자 B(月 25만원)	300만원	
	근로자 C(月 25만원)	150만원	

- 근로자 C가 중도해지 하였을 경우,

'2년차 인력개발비 해당 납입비용은? 750만원-450만원=300만원

ex) 세액공제 (750만원 - 450만원) × 25% = 75만원 (단, 세액보다 해지환급금 많을 시)

* 해당 연도 총 발생액 기준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 발생액 기준(50%) 선택 가능

사례 3 세액공제 대상 금액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을 경우

1년차	근로자 A(月 30만원)	360만원	총 360만원
2년차	근로자 A(月 30만원)	360만원	총 960만원
	근로자 B(月 25만원)	300만원	
	근로자 C(月 25만원)	300만원	
3년차	근로자 A(月 30만원)	180만원(중도해지)	총 780만원
	근로자 B(月 25만원)	300만원	
	근로자 C(月 25만원)	300만원	
4년차	근로자 A	납입금 없음	총 600만원
	근로자 B(月 25만원)	300만원	
	근로자 C(月 25만원)	300만원	

- 근로자 A가 '3년차에 납입하고 중도해지 하였을 경우(총 납입금 900만원),

'3년차의 인력개발비 해당되는 납입비용은?

(780만원-900만원) = 0원으로 납입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없음. (미차감 금액 120만원 발생)

* 세액공제 없음 (이전과세연도에 빠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포함)

사례 3-1 미차감금액이 존재하나 다음해에 공제가입자가 없을 경우

- 근로자 A가 '3년차 중도해지 하였을 경우(미차감금액120만원),

'4년차의 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납입비용은?

600만원-120만원(미차감금액) = 480만원

ex) 세액공제 (600만원-120만원) × 25% = 120만원

사례3과 사례3-1의 결과는 당해연도 세액공제 납입금액이 적을 시('3년차 세무조정 필요없음)에
는

다음연도 발생하는 인력개발비에 대한 납입비용('4년차 세액공제 반영)에서 차감한다.

Part 4

질의응답

1. [기 업]
세제혜택 관련 질의 응답
2. [근로자]
세제혜택 관련 질의 응답



1 [기업] 세제혜택 관련 질의응답

Q1 (세금감면 혜택이 없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세금감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제1항 각 호] <개정 2018. 2. 13., 2023. 2. 28.>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개정 2023. 2. 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Q2 세제혜택 (납입비용+세액공제) 비교

구분	손금 또는 필요경비	세액공제	만기공제금 수령 시 근로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0	0	청년 90%, 그 외 50% 감면
중견기업	0	0	청년 50%, 그 외 30% 감면
특수관계인* 에 대한 납입비용	0***	X**	감면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6 1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제10항제4호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불가 할 수 있음.

Q2-1 중견기업에 대한 기업 기여금 세제혜택 가능한가요?

- 중견기업도 세제 혜택 가능합니다. 기업기여금(납입금)에 대해 비용인정 + 세액공제 8%

(참고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제3호

Q3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유예기간에 따라 비율 적용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제3호나목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ㄱ. 중소기업인 경우 : 25%
- ㄴ.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a.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5%
 - b. a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0%
- ㄷ. 중견기업이 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8%
- ㄹ. ㄱ부터 ㄷ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 (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Q4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세제혜택이 있나요?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비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손비(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조특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의료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가 불가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3. 근로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 의료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감면이 불가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Q5 A기업에서 B기업으로 계약승계 시 세액공제 관련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적용기업은?

- A기업에서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하여 납입한 공제부금만큼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적용 승계 이후 순수 B기업에 납입한 금액만큼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적용

Q6 A만기금 수령 시 기업측에서 신고해야할 서류는?

- 기업측에서는 핵심인력이 수취한 만기금 중 기업기여금을 만기 수령일이 속하는 당월에 급여(근로소득)로 지급한 것처럼 세무처리를 해야함. 이후 살펴보아야할 세무서식은 아래와 같음.

서식 종류	제출시기		용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한 총액을 신고하기 위함
	반기납부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20인이하 사업장만 해당)	
지급명세서	근로사업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그 다음연도의 3월 10일까지	총소득에 대한 각각의 귀속자와 원천징수한 세금이 얼마인지 등 별도로 상세히 나타내기 위함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예:3월 지급시 7월31일)	매월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단순히 신고하기 위한 것

2 [근로자] 세제혜택 관련 질의응답

Q1 (법 시행일)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에 따르면 세금감면 조항은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부칙 <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13조(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Q2 근로자 만기 시 공제금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청년의 경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2. 28.>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청년' 판단은 성과보상기금 가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청소년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 등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포함)와 그 배우자,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연령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근로자 만기 시 공제금 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2025년 이후 가입자는 감면이 불가한가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르면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Q4 공제사업간 연계가입자(청년-일반, 청년-연계형) 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만기 공제금의 수령 여부가 소득세 감면에 영향이 있나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가입하여 만기 수령 할 경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이후 기업이 납부한 기업기여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50%(중견기업3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 또는 4년형으로 연계가입 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 공제 만기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가입하여 5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감면요건>	
연계가입 기간	수령방법
3년	미수령
4년	미수령
5년	일괄수령(미수령 불필요)

Q5 만기공제금 지급에 따른 4대 보험에 영향이 있나요?

- 소득세법상, 핵심인력이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수령 시 기업과 핵심인력의 4대 보험료 증가분이 있습니다. (Q5-1 참조)

○ 4대 보험료 산정 방식

-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월단위로 나눈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2023년 7월1일 기준 4대보험 요율>

구분	근로자	사업주	비고
국민연금	4.5%	4.5%	보수월액 590만원 상한
건강보험	3.545%	3.545%	보수월액 780만원 상한
장기요양	6.475%	6.475%	건강보험료에 계산
고용보험	0.9%	0.9%	150인 미만 기준
산재보험	없음	업종별 상이	0.7% ~ 18.6%

○ 보험료 부과 및 정산

- 적용 기간 : 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기간은 국민연금은 당해 7월부터, 나머지는 4월부터 적용됨.
- 정산 : 전년도 보수총액과 당해년도 실제 보수총액이 다른 경우 건강·고용·산재보험은 다음 해 4월 일괄정산, 국민연금은 12개월 균등 납부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기간	당해 7월 ~ 다음년도 6월	당해 4월 ~ 다음년도 3월		
정산여부	12개월 균등 납부	매년 2월 말까지 신고 후 4월 일괄정산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 후 4월 일괄정산	

Q5-1 만기공제금 예상 수령액 예시

(예시) 평균 연봉 3,600만원인 중소기업 청년 핵심인력이 근로자 납입금 총 600만원 중소기업 기여금 총 1,440만원으로 가정.

1. 내일채움공제 가입 전과 후 비교

(2023년 07월 01일 기준)

구분	내일채움공제 가입전	내일채움공제 가입후(만기)
평균연봉	36,000,000	36,000,000
근로자 납입금	-	6,000,000(비과세)
(+) 중소기업 기여금	-	14,400,000
총급여	36,000,000	50,400,000
(-) 소득공제	10,650,000	12,270,000
(-) 인적공제	1,500,000	1,500,000
과세표준	23,850,000	36,630,000
기본세율	15%	15%
산출세액	2,317,500	4,234,500
(-) 근로소득세 90% 감면*	0	1,088,870
(-) 근로소득 세액공제	716,000	660,000
(-) 표준세액공제	130,000	130,000
근로소득세 납부액 (e)	1,471,500	2,355,630

* 90% 감면액 : 4,234,500*(14,400,000원/50,400,000)*90%

1. 청년의 범위 : 15세~34세(공제금 가입시 총족 나이)

2. 중소기업 '청년'에 해당할 경우 근로소득세 90% 감면

3. 중소기업 '그외'에 해당할 경우 근로소득세 50% 감면

2. 만기공제금 예상 수령액

구분	금액	비고
만기공제금(5년)	20,400,000	(근로자 월10만원 기업부담금 월24만원)
(+) 이자수익	1,836,000	(복리 3% 가정)
세전 공제금	22,236,000	
(-) 이자수익의 원천징수	-282,744	원천징수 15.4%(공제)
원천징수후 지급액	21,953,256	
(-) 근로소득세 추가납부액	-884,130	청년 90% 감면
(-) 4대보험 추가납부액	-1,871,088	근로자 부담금 9.172%
최종 실수령액	19,198,038	

* 이자수익은 근로자마다 계약 일자, 만기 일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수령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Q6 연말정산에 기업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근로자

- 만기공제금을 수령(세액감면 대상)하거나,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하여 기업기여금을 수령(감면 대상 아님)한 근로자

- 원천징수 영수증상 근로소득 총지급액에 근로자가 수령한 기업기여금 합산하여 신고 감면시 (감면코드 T40~T43, 기재란 ㉔-34)

Q7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의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 시 세제혜택 (비용인정+세액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가입하여 만기 수령할 경우, 기업이 납부한 기업기여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50%(청년 90%), 중견기업 50%(청년 30%)감면이 가능합니다.
- 다만, 3년 또는 4년형으로 연계가입 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 가입하여 5년 이상 납입해야 근로소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최초 공제가입 나이 기준으로 청년, 그외 대상으로 감면 적용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

<근로소득세 감면요건>

연계가입 기간	수령방법
3년	미수령
4년	미수령
5년	일괄수령(미수령 불필요)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미수령) + 내일채움공제 3년 연계가입
 → 근로소득세 감면대상 금액 = 5년간 기업이 부담한 기업납입금

Q8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공제금을 분할수령 할 수 있나요?

- 만기수령자에 대한 혜택으로 기업납부금에 대한 소득세 중소기업 90%, 50%(중견기업은 50%, 30% 감면) 감면을 받기 위해 일시수령은 1회 제출하면 되나, 분할지급은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담당자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필요(미제출 시 소득세 감면 불가)
- 분할 수령 후 일시수령으로 공제금 지급은 가능하나, 분할지급 청구일 이후로는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1. 분할수령은 36개월간 원금균등분할 방식 수령으로 기간조정 등이 불가능
2. 분할지급 청구일까지의 기업납부금, 근로자납입금, 만기이자, 만기 후 이자가 합산되어 분할수령 원금이 되며, 월별수령금액을 제외한 그 이자 등은 최종 분할지급 기일에 지급됨

Q9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발급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팩스 전송 가능
- (직접발급)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조회 및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
- (통합정보시스템) [지급지출결의] → 청약번호 검색 → 원천징수영수증 → 팩스 번호 입력 → 전송

Q10 세제혜택 시 활용하는 납입확인 서류의 발급 방법

- 납부확인서발급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발급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출력 가능
- (직접발급)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조회 및 발급 → 공제계약 부금납부 확인서 → 발급
- (통합정보시스템) [납부확인서 발급] → 청약번호 검색 → 납부확인서_핵심인력/중소기업 선택 → 출력

Part 5

관련 서식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원천징수의무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가입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종료일	만기 시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 금	근로자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만기 시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란에는 기업이 해당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 가입일부터 종료일까지 성과보상기금에 부담한 기여금 총액을 적습니다.
2. 근로자 유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근로자 유형과 동일하게 청년(15세~34세)과 그 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1.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근로자 유형	[] 청년(15세~34세) [] 그 외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 기간(5년)

⑤ 가입 일	년 월 일
⑥ 종료 일	년 월 일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만기 시 수령한 공제금

⑦ 총 수령 금액	원
- ⑧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감면대상)	원
- ⑨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납입금(既 과세)	원
- ⑩ 그 외 금액(이자소득세 과세)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첨부서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공제납입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 감면을 신청한 경우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 시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의 50%(청년근로자 90%), 중견기업의 경우 30%(청년근로자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2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3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계정 과목	구 분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⑥ 금액	건수	⑦ 금액	건수 ⑧ 금액
	합 계					
계정 과목	구 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⑪ 총 계 (⑥+⑦+⑧+⑨+⑩)
		건수	⑨ 금액	건수	⑩ 금액	
	합 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⑫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11)	⑬ 직전 4년 발생액 계 (14)+15+16+17)	⑭ (직전 1년)	⑮ (직전 2년)	⑯ (직전 3년)	⑰ (직전 4년)
⑱ 직전 4년간 연 평균발생액 (13/4)		⑲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14)+15+16]/3]		⑳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14)+15]/2]	
	㉑ 증가발생액 (12-14)				

4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㉒ 대상금액(=11)	㉓ 공 제 율 25%			㉔ 공제세액 (22×23)
	중소기업 유예 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㉕ 대상금액(=11)	㉖ 유예기간 종료연도	㉗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	㉘ 공 제 율 종료 이후 1~3년차 15% 종료 이후 4~5년차 10%	㉙ 공제세액 (25×28)
	중견기업	㉚ 대상금액(=11)	㉛ 공제율 8%			㉜ 공제세액 (30×31)
	일반기업	㉛ 대상금액(=11)	㉜ 기본율	㉝ 추가	㉞ 계 (34+35)	㉟ 공제세액 (33×36)
			0%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 또는 14<18 경우 공제 제외)		㉟ 대상금액(=21)	㊱ 공제율 %	㊲ 공제세액 (38×39)	*공제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25%	
㊳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29와 40 중 선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29와 40 중 선택)		중견기업(32와 40 중 선택) 일반기업(37과 40 중 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연구·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구분	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⑥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재료비 등의 “⑦ 금액 “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상품제작에 한함)·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를 적습니다.[별표6 제1호가목2) 항목]
3. 기타의 “⑧ 금액 “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별표6 제1호가목3) 항목]
4. 인력개발비의 “⑩ 금액 “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에 따른 위탁훈련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을 적습니다.
5. 공제율의 “㉓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2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6. ⑤, ⑥의 “구분 “란은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 “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⑥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과 세 연 도	· · · ~ · · ·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사업자 등록번호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연구과제명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전담, []보조, []기타
				[]전담, []보조, []기타
				[]전담, []보조, []기타
				[]전담, []보조, []기타
				[]전담, []보조,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③ 연구 과제명	④ 재료비 등				
	계	건본품 등 (별표 6 1.가.2))	임차료 등 (별표 6 1.가.3))	위탁·공동연구비 (별표 6 1.나)	기타 (별표 6 1.다~사)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⑤ 연구 과제명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①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1명의 연구원이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② 연구개발 인력 개발비"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인건비의 '⑥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라.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마.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다. "④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재료비 등의 '⑦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 제1호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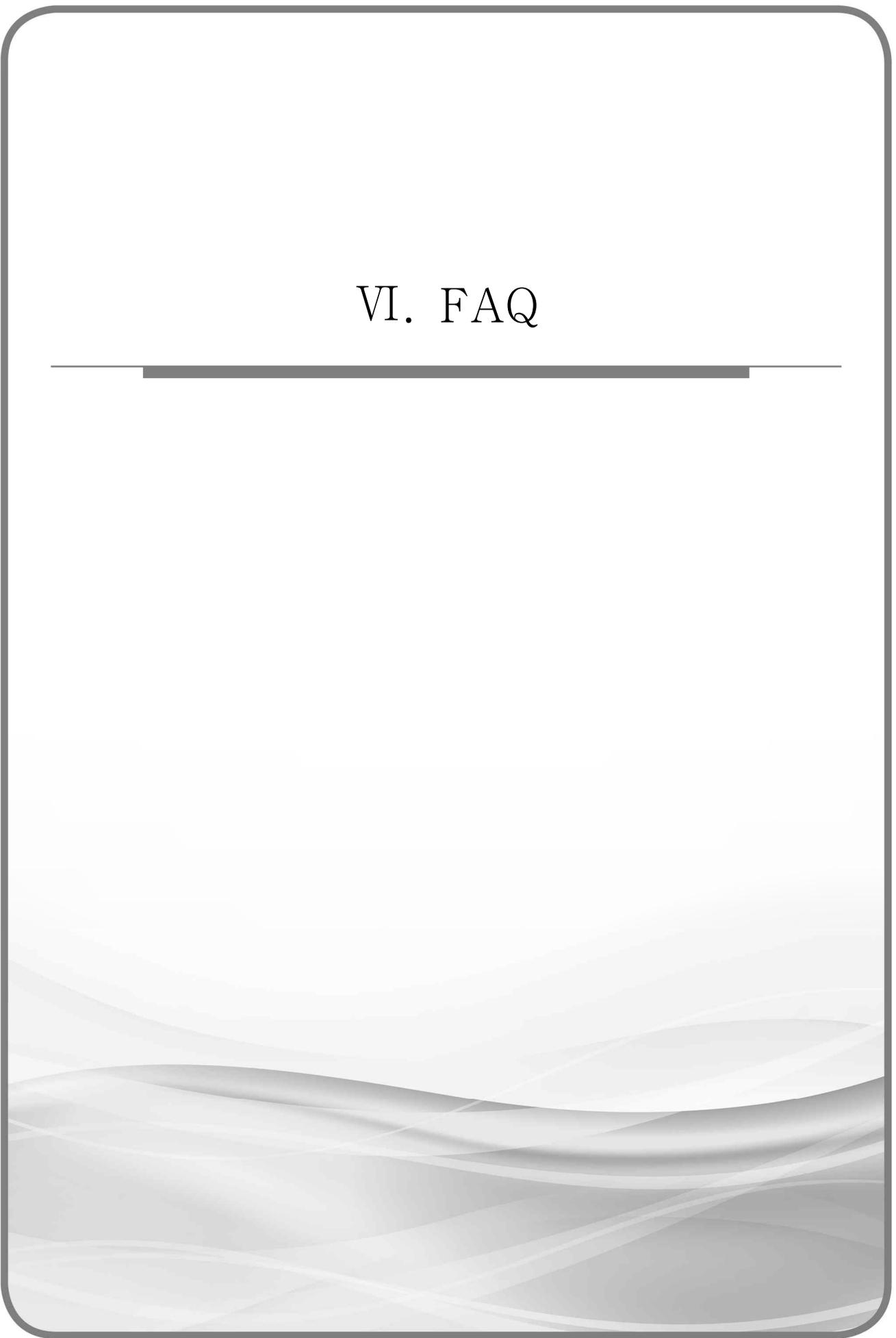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 포함)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⑦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의 '⑨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마.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VI. FAQ



공통

공제상품 문의 관련

Q1.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차이

A1.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 기업이 1 : 2(↑) 비율, 최소 공제부금 34만원 공제금을 적립,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3년간 정부지원금 적립을 통해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 추가 지원

내일채움공제는 모든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2. 내일채움공제의 정부지원금 지원 여부

A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시사업('22년 일몰)으로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만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통

가입 자격 관련

Q3. 내일채움공제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

A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이 가입 대상

※ 단,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됨. 또한, 휴폐업 기업, 세금 체납 기업,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진공에 의해 계약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는 가입이 제한됨

※ 의료법인 및 비영리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에 따른 규모 이하 가입가능

Q4. 부업(또는 프리랜서)으로 4대보험이 중복 가입된 근로자의 가입 가능 여부

A4.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폐업 후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함

- 가입하는 주 사업장에서의 근로 요건이 가입 제한사항(단시간 근로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단,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제22조의3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공제에 가입 가능
- 주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유지

Q5. 주업종은 가입제한 대상이 아니나, 부업종이 가입제한 대상인 경우

A5. 가입 가능. 주 업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4조(주된 업종기준)에 따라 매출액으로 판단

Q6.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가입 가능 여부

A6. 병역특례자 여부는 가입요건 고려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가능함
단, 해당기업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재직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가입 제외 대상임

Q7. 타 기업 대표자 겸직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매출이 없다면 가입 가능한 지 여부

A7.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자도 가입이 불가능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8. 지방세·국세 징수유예 중 가입 가능 여부

A8. 징수유예는 체납이 아니므로 가입이 가능함. 단, 체납처분유예는 체납이므로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Q9. 4대보험 일부만 가입 시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

A9. 나이(국민연금), 업종 및 규모(산재보험)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4대보험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청약신청 가능함

※ 임원(이사 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로 판단하여 가입 가능

Q10. 기업을 인수하여 기존 기업의 체납금을 상환하는 경우 가입 가능 여부

A10. 체납중인 기업으로 체납금 상환 완료 이후 가입 가능함

*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 별도의 세금분납계획서 양식은 존재하지 않음

Q11. 감정평가법인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

A11. 부동산업종으로 가입가능('21.06.09일 이후)

* 부동산 감정 평가법인 분류코드 68223

Q12. 상호저축은행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

A12.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조에 따라 주식회사로, 지원 대상에 해당함. 단, 중소기업확인서 수령 후 중소기업 여부 확인

Q13. 청약철회(직권철회 포함) 이후에 신규 가입 가능 여부

A13. 청약철회 사유 해소 후 요건이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
단, 철회사유가 부정수급자·부정수급시도자인 경우 가입제한의 이후 가입이 가능함

구분		기간	비고
부정수급자	근로자	2년	제재 강화
	기업	2년	
부정수급 시도자	근로자	1년	현행유지
	기업	1년	

Q14. 육아휴직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

A14. 육아휴직인 경우 근로자이나 근로의무가 면제된 경우로서, 기업납입금을 가입회사가 직접 납입하고, 4대보험 등이 유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필요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회사 복지규정 등 확인)

(‘22.1.’20.06 조○수 노무사 의견) 휴직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가 없다는 점이 있지만, 육아휴직자도 근로자를 전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제공 의무만 면제된 상태이므로, 약관상 가입대상에 해당되고 장기재직의 공제사업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입자가 정상 납부 중인 경우 가입 유지 인정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예시)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중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Q15.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이직하고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가능 여부

A15. 다른 기업에서의 가입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동일기업집단*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동일기업집단 시 청년연계형 가입은 창구접수로만 가능

Q16. 만기공제금 미수령(또는 분할수령) 시 연계가입/재가입 가능여부

A16. 만기금 수령 여부는 연계가입/재가입과 무관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수령 가능하나, 일반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경우 미수령 불가

Q17. 재가입과 연계가입(청년연계형) 신청기한 및 가입기간

A17. 내일채움공제 및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품별 상이(아래 표 참조)

※ 유형별 신청기한 및 가입기간

구분	재가입	연계가입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내일→내일)	청년재직자(플러스) (청년재직자→내일)	청년공제(고용부) (청년공제→내일)	청년공제(고용부) (청년공제→내일)
신청기한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청년공제 만기 후)
가입기간 (연 단위)	3년~10년	3년 ~ 10년	3년~10년	3년(고정)

* 청년재직자 재가입 대상은 기업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자로 한정, 가입기간은 5년

** 장기재직경력료 지급 기준 : 만기 후 6개월 이내 가입, 7년 이상 가입

Q18. 청년공제→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과 청년연계형가입 차이점

A18. 청년연계형의 경우 가입기간이 3년 고정이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납입기여금이 각각 14만원으로 1:1 고정인 반면, 연계가입의 경우 가입기간을 3~1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납입기여금이 2:1비율임.

구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
공제기간	3년	3~10년
납입금(기업:근로자)	1:1 (14만원 고정)	2:1 (합쳐서 34만원 이상)

공통

청약신청 관련

Q19. 개인사업자 공제가입 시,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활용 가능 여부

A19. 불가능, 기업 가입 시 범용 또는 제한용(4,400원) 공동인증서 활용

Q20. 중소기업확인서의 필수 제출 여부

A20. 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가 '80', '82', '83', '89'인 경우 「중소(중견) 기업 확인서」 혹은 「사회적기업인증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가 필수 구비서류임

Q2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A21. 체납중인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세금 완납 후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안내

Q22. 청약 신청 시 매출액 작성 기준 시점

A22.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Q23. 국세 납세증명서의 발급 기준

A23. 법인사업자의 경우 국세 납세증명서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만 발급되므로 지점 가입자는 본점의 국세 납세증명서를 제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국세 납세증명서 제출

Q24. 외국인의 공제가입 시 필수 제출 서류

A24. 기존 필수구비서류 및 여권사본(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 조회) 또는 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 확인)

Q25. 국세 체납중인 기업이 가입 희망 시,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A25. 체납 중인 기업은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나,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 가능함

- 단, 별도로 정해진 「체납액납부계획서」 양식이 없으므로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인정한 분납 승인 서류를 확인하거나, 해당 서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금 완납 이후에 신청토록 안내
 - 또한, 가입 시에도 체납이 해소될 때까지 정부지원금의 적립이 불가함
-

Q26.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

A26. 불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만기사이면서, 만기자를 배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Q27.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6개월 이내 신청이 필수인지

A27.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6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가능합니다.

- 다만, 장기재직 격려금 400백만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연계 가입해 총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 * 청년공제 만기 후 6개월 이내 청년연계형내일채움공제(3년) 가입 → 장기재직격려금 ×
- * 청년공제 만기 후 6개월 이내 청년연계형내일채움공제(3년) 가입 → 청년공제 만기금 미수령시 5년만기 시 세액공제 혜택 부여
- * 청년공제 만기 후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 가입, 총 7년 이상 만기 → 장기재직격려금 ○

Q28.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3년)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 다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3년) 가입 가능 여부

A28.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1회에 한합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 다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은 가능합니다.

Q29.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 시 장기 재직격려금 수령이 가능 여부

A29.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만기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에서 내일채움공제 연계(4년이상) 가입 시 장기재직 격려금 수령이 가능.

- 장기재직 격려금 지급 조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 ① 계약기간(청년공제 가입기간 + 내일채움공제(기존) 가입기간) 7년 이상
 - ② 청년공제 만기 후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만기도래
-

Q30.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가입후 청년연계형내일채움공제(3년)를 가입하고 이후에는 내일채움공제(3년)재가입이 가능한지? 이 경우 장기재직격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A30.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 시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3년)은 불가능하며 장기재직격려금 또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1.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금이 없는데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장려할 홍보 주안점

A31. 기존 내일채움공제(5년) 대비 기업 및 근로자의 납입금 부담완화 및 공제가입 기간이 축소 되었으며, 만기 시 이자 또한 복리이율로(24년. 2분기 이율 3.13%) 지급 또한, 공제 가입시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한 세제혜택(비용인정, 세액공제,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예치시
